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(7판)

1. 관련: 산업보건과-872(2020.2.24) 「코로나19(COVID-19)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(6판)」
2. 「코로나19(COVID-19)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('20.2.24)」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**변경**하여 **재배포**하오니, 해당 부처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**사업장 대응 지침을 안내·홍보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구분	주요 변경 내용	비고
I 코로나19 개요	-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	P1,3
II 대응방안	- 기본 방향 보완·수정 -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·수정(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) - 배송·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·수정 - 중앙방역본부 집단·다중시설 소독 지침(2-1판) 반영	P4~10
III 대응방안	- 유연근무제,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·수정 -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용 추가 -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	P12~15
참고 및 붙임	- 코로나19관련 자주하는 Q&A(고용노동부) 추가 - 중앙방역대책본부의 「코로나19대응지침(7판)」 및 「코로나19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(2판)」, 「코로나19 환자이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(2-1판)」 반영	P16~29 P35~42 P69~81

※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

붙임: (7판)코로나19(COVID-19)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.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국무조정실장,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본부장, 기획재정부장관, 외교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국방부장관, 교육부장관, 법무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소방청장, 경찰청장,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전문위원 **김민지** 보건사무관 **이종걸** 산업보건과장 **김동욱** 전결 2020. 3. 10.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과-1148 접수 교통정책조정과-1152 (2020. 3. 11.)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748 팩스번호 044-202-8093 / minji7748@korea.kr / 비공개(5)

"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